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의견 청취안

인 천 광 역 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광장) 의견 청취안

의안 번호	1015
----------	------

제출연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 1. 제안사유

- 2012.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광장) 현황

구 분	개 소	면 적 (천㎡)	집 행			미집행			
			개소	면적 (천㎡)	%	개소	면적 (천㎡)	%	
계	1,340	55,368	1,183	39,690	71.7	157	15,678	28.3	
공간 시설	공원	364	45,474	285	30,770	67.7	79	14,704	32.3
	녹지	920	9,466	848	8,594	90.7	72	872	9.3
	광장 (일반,미관)	56	428	50	326	76.1	6	102	23.9

##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현황

구 분	개 소	면 적(천㎡)	비고(관리청 의견)	
계	65	13,892		
공 원	소계	56	13,199	
	도시자연공원	3	5,737	존치 : 3
	근린공원	48	6,530	존치 : 41, 해제 : 7
	체육공원	1	22	존치 : 1
	역사공원	2	163	존치 : 2
	산림휴양공원	1	339	존치 : 1
	도시생태공원	1	408	존치 : 2
	녹지(완충녹지)	9	693	존치 : 2, 해제 : 7
광장(일반,미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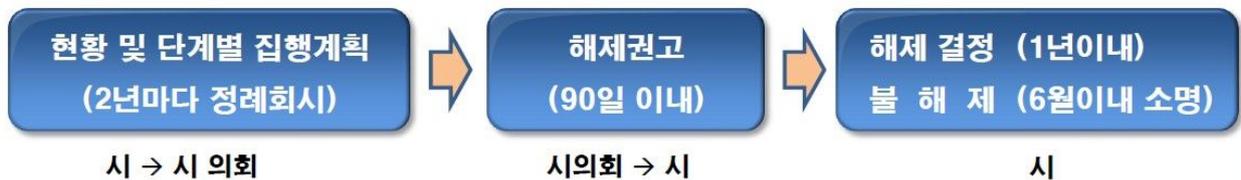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 : 붙임참조

## 다.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개 소	1단계 (2013 ~ 2015년)	2단계 (2016년 이후)	비 고
계	65			※ ( )는 1·2단계 중복
공 원	56	27	56(27)	
녹 지	9	2	9(2)	

## □ 참고사항

### ○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



- 붙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 1부.  
 2. 위치도 각1부.  
 3. 관계법령 1부.  
 4. 관리카드 각1부.(별도첨부)

[붙임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

○ 공원 (56개소, 13,199,667㎡)

연번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청의견 (군·구·사업소)
	계		56개소	13,325,817			
1	검단중앙공원	도시자연 공원	서구 왕길동	605,733	1998.06.12	1~2단계	민간개발사업 추진중
2	왕산공원	도시자연 공원	중구 을왕동	1,393,396	2001.08.27	2단계	용유무의 개발사업 추진중
3	무의공원	도시자연 공원	중구 무의동	3,737,774	2001.08.27	“	“
4	을왕공원	근린공원	중구 을왕동	579,617	2001.08.27	“	“
5	오성공원	근린공원	중구 덕교동	880,214	2001.08.27	“	“
6	소월미공원	근린공원	중구 북성동1가	4,154	1970.07.20	“	해제
7	용현공원	근린공원	남구 용현동	29,571	1971.01.29	“	존치
8	햇골공원	근린공원	남구 학익동	135,862	1944.01.08	1~2단계	“
9	송도제2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옥련동	60,000	1944.01.08	2단계	“
10	옥련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옥련동	83,190	1996.07.31	1~2단계	“
11	무주골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선학동	120,897	1944.01.08	“	“
12	청솔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청학동	30,436	1944.01.08	“	“
13	사모지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연수동	62,760	1944.01.08	“	“
14	수리봉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연수동	11,998	1944.01.08	“	“
15	학나래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선학동	47,681	1944.01.08	“	“
16	농원공원	근린공원	연수구 동춘동	46,291	1966.08.31	“	“
17	도림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도림동	428,874	1966.08.31	2단계	보존녹지 대체검토
18	고잔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고잔동	202,824	1966.08.31	“	부분해제

연번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청의견 (군·구·사업소)
19	석촌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간석동	53,577	1966.08.31	1~2단계	존치
20	비루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만수동	41,827	1966.08.31	“	“
21	산밑말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만수동	29,545	1966.08.31	“	“
22	실은재공원	근린공원	남동구 간석동	10,937	1966.08.31	“	“
23	신촌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부평동	428,985	1986.09.29	“	“
24	굴재미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부평동	44,525	1944.01.08	“	“
25	서달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청천동	183,027	1944.01.08	“	“
26	산마루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산곡동	60,019	1944.01.08	“	“
27	구로지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산곡동	211,499	1944.01.08	“	“
28	함봉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십정동	151,089	1970.07.20	“	“
29	장고개공원	근린공원	서구 가좌동	25,399	1970.07.20	“	“
30	새별공원	근린공원	계양구 계산동	121,633	1944.01.08	“	“
31	아나지공원	근린공원	계양구 계산동	24,684	1944.01.08	“	“
32	검암공원	근린공원	서구 검암동	296,396	1966.08.31	2단계	보존녹지,구역 등으로 대체
33	검단25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26,000	1998.06.12	“	“
34	검단23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52,000	1998.06.12	“	“
35	검단17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51,000	1998.06.12	“	“
36	검단24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34,500	1998.06.12	“	“
37	검단16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137,800	1998.06.12	“	“
38	금산공원	근린공원	서구 경서동	80,660	1966.08.31	“	“

연번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청의견 (군·구·사업소)
39	승학공원	근린공원	서구 가정동	613,481	1987.04.22	2단계	보존녹지,구역 등으로 대체
40	검단14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마전동	183,000	1998.06.12	“	“
41	검단15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왕길동	96,500	1998.06.12	“	“
42	마전공원	근린공원	서구 마전동	113,000	1993.12.31	“	“
43	금곡공원	근린공원	서구 금곡동	30,000	1993.12.31	“	“
44	토담공원	근린공원	서구 마전동	30,000	1993.12.31	“	“
45	장도공원	근린공원	서구 경서동	81,339	1970.07.20	“	“
46	돌룩골공원	근린공원	서구 가정동	83,419	1944.01.08	1~2단계	존치
47	관청공원	근린공원	강화읍 관청리	145,124	1972.08.23	2단계	해제 또는 축소
48	남산공원	근린공원	강화읍 신문리	462,044	1972.08.23	“	“
49	내가공원	근린공원	내가면 고천리	45,000	1974.05.16	“	“
50	대룡공원	근린공원	교동면 대룡리	33,000	1974.05.16	“	“
51	온수공원	근린공원	길상면 온수리	27,700	1985.12.11	“	“
52	현무공원	체육공원	서구 마전동	22,497	1996.01.10	“	보존녹지,구역 등으로 대체
53	전등공원	역사공원	길상면 온수리	143,607	1974.5.16	1~2단계	존치
54	북산공원	역사공원	강화읍 관청리	19,728	1972.08.23	“	“
55	청량공원	산림휴양 공원	연수구 청학동	338,798	1966.08.31	“	“
56	도룡농공원	도시생태 공원	남동구 만수동	407,880	1966.08.31	“	“

○ 녹지 (9개소, 692,815㎡)

연번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청의견 (군·구·사업소)
	계		9개소	692,815			
1	녹지 (대로1-502호선변)	완충녹지	중구 운북동 일원	211,504	2000.07.03	2단계	해제
2	녹지 (대로1-501호선변)	완충녹지	중구 중산동 일원	274,252	2000.07.03	“	전면 재검토
3	녹지 (대로2-501호선변)	완충녹지	중구 덕교동 일원	117,360	2001.10.23	“	용유무의개발 사업 추진중
4	학익녹지	완충녹지	남구 학익동	51,510	1987.03.14	1~2단계	존치
5	경인 철도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간석동	3,955	1970.02.09	2단계	해제
6	동수녹지	경관녹지	부평구 부평동	6,924	1987.01.08	1~2단계	부분해제
7	옥련녹지	경관녹지	연수구 옥련동	16,400	1977.05.13	2단계	해제
8	남산1녹지	완충녹지	강화군 남산리	4,720	1988.02.20	“	해제 또는 축소
9	남산2녹지	완충녹지	강화군 남산리	6,189	1988.02.20	“	“



### 3. 무의공원



### 4. 을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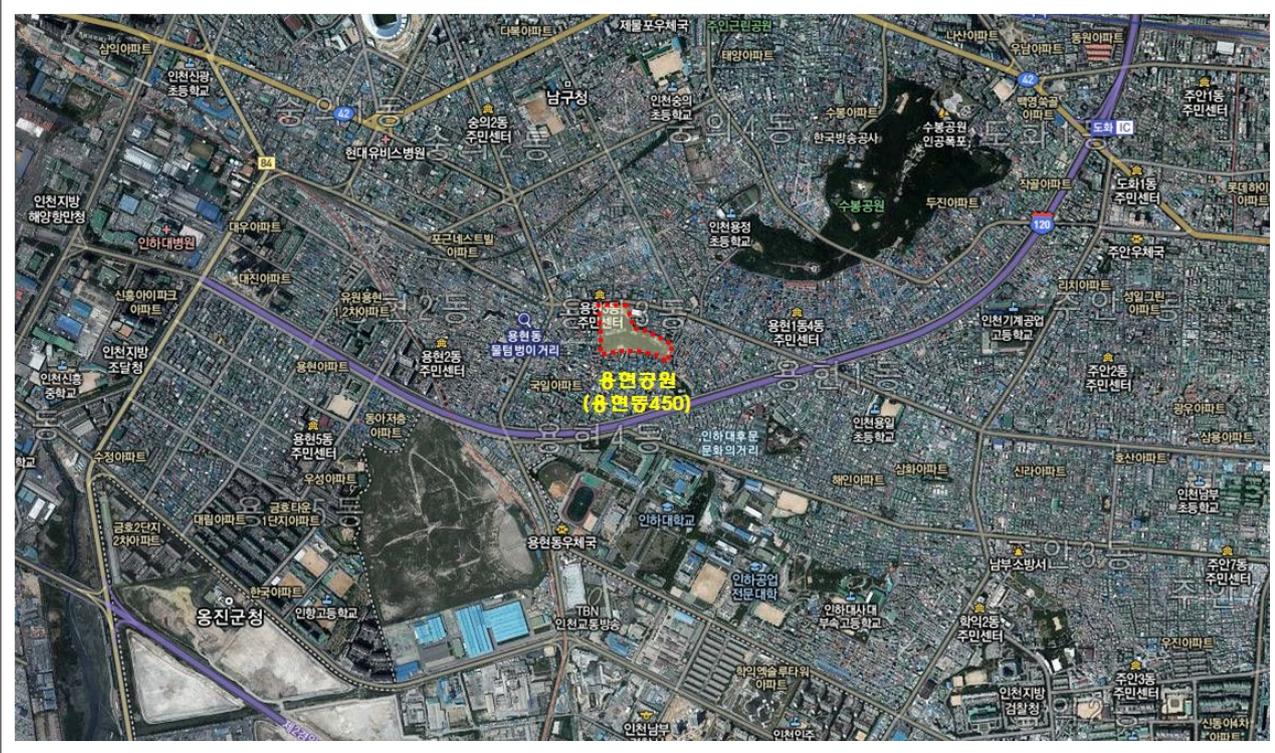
## 5. 오성공원



## 6. 소월미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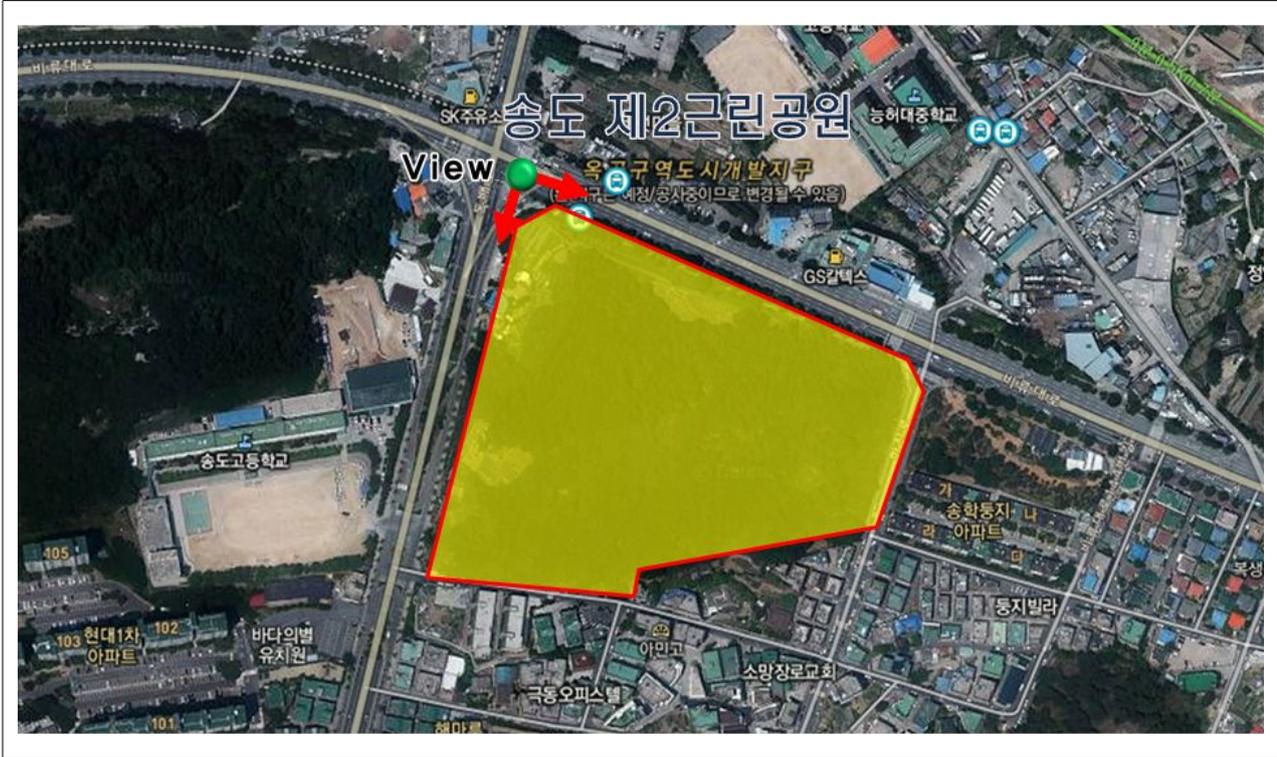
## 7. 용현공원



## 8. 햇골공원



### 9. 송도제2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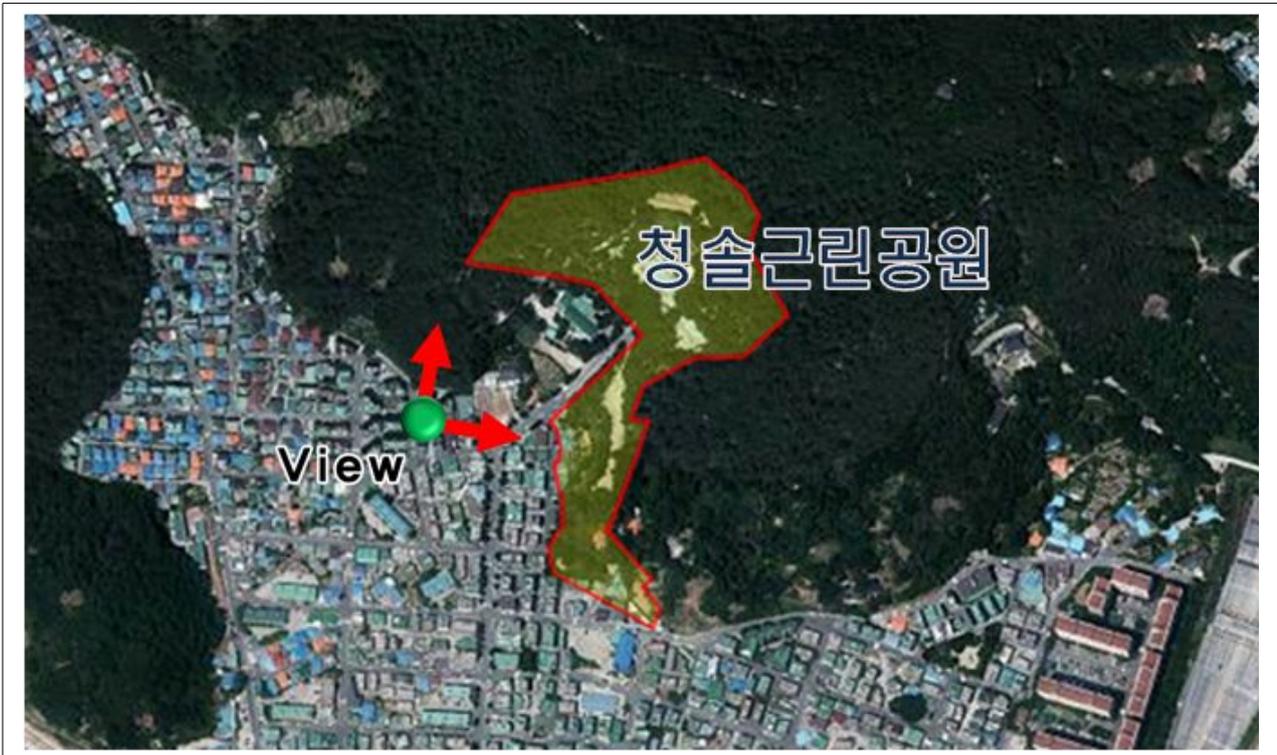
### 10. 옥련공원



## 11. 무주골공원



## 12. 청솔공원



13. 사모지공원



14. 수리봉공원



15. 학나래공원



16. 농원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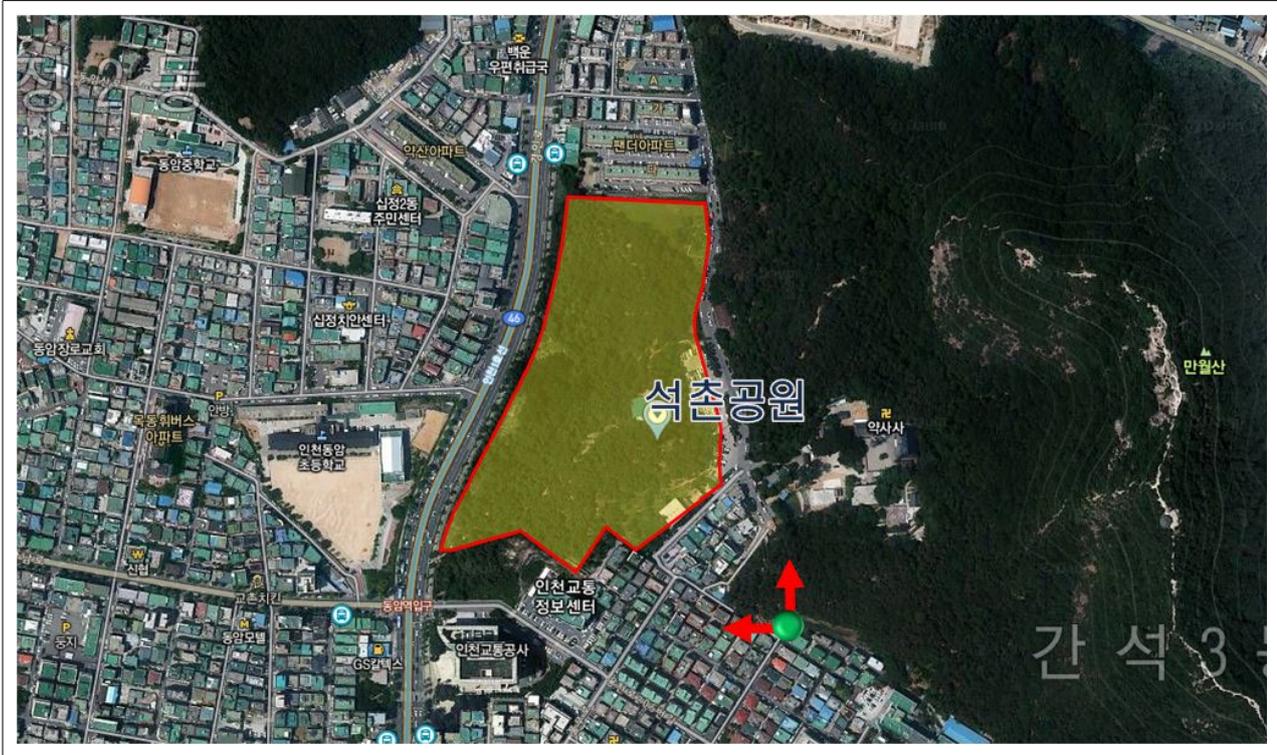
### 17. 도림공원



### 18. 고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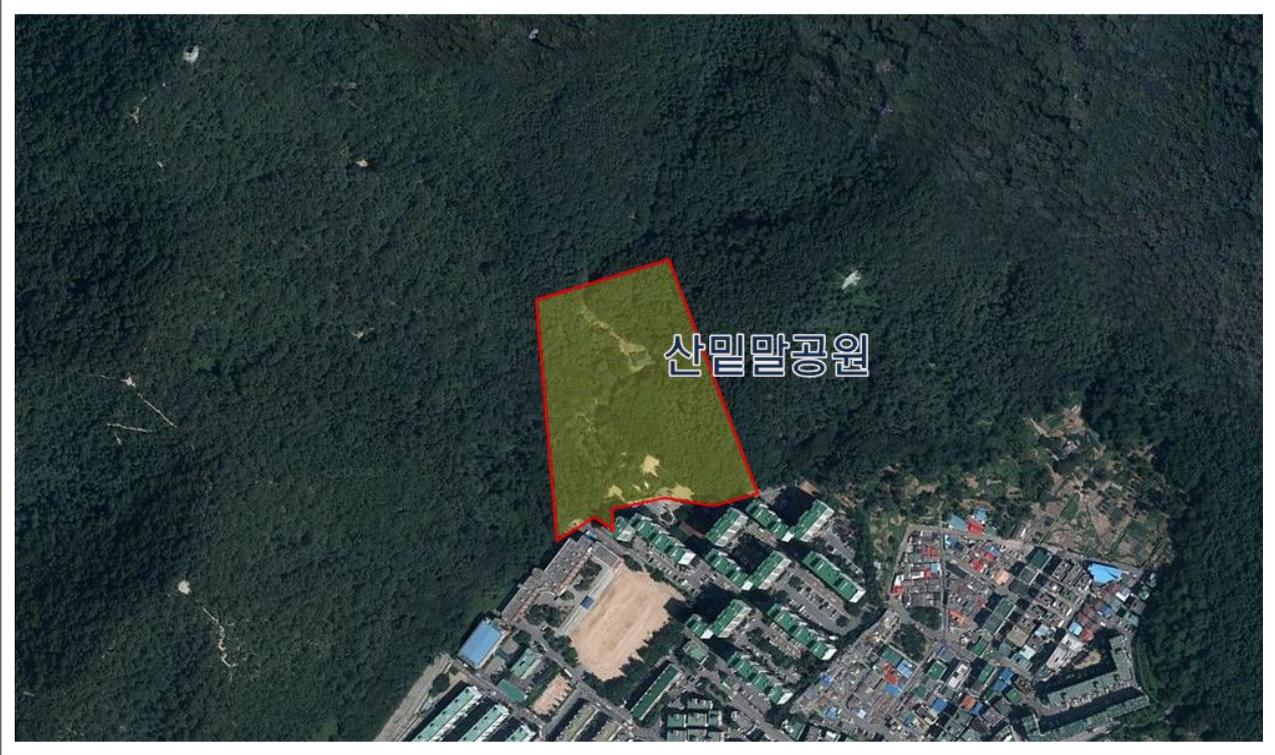
## 19. 석촌공원



## 20. 비루공원



21. 산밑말공원



22. 실은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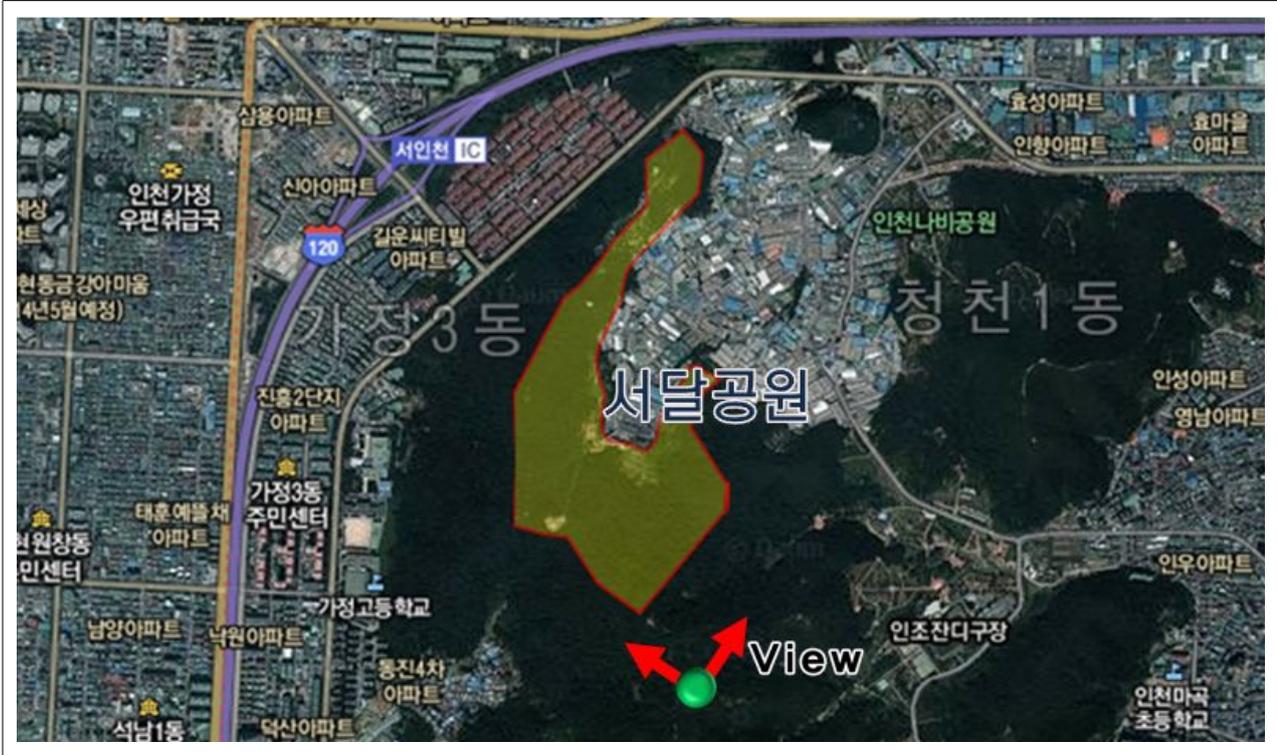
### 23. 신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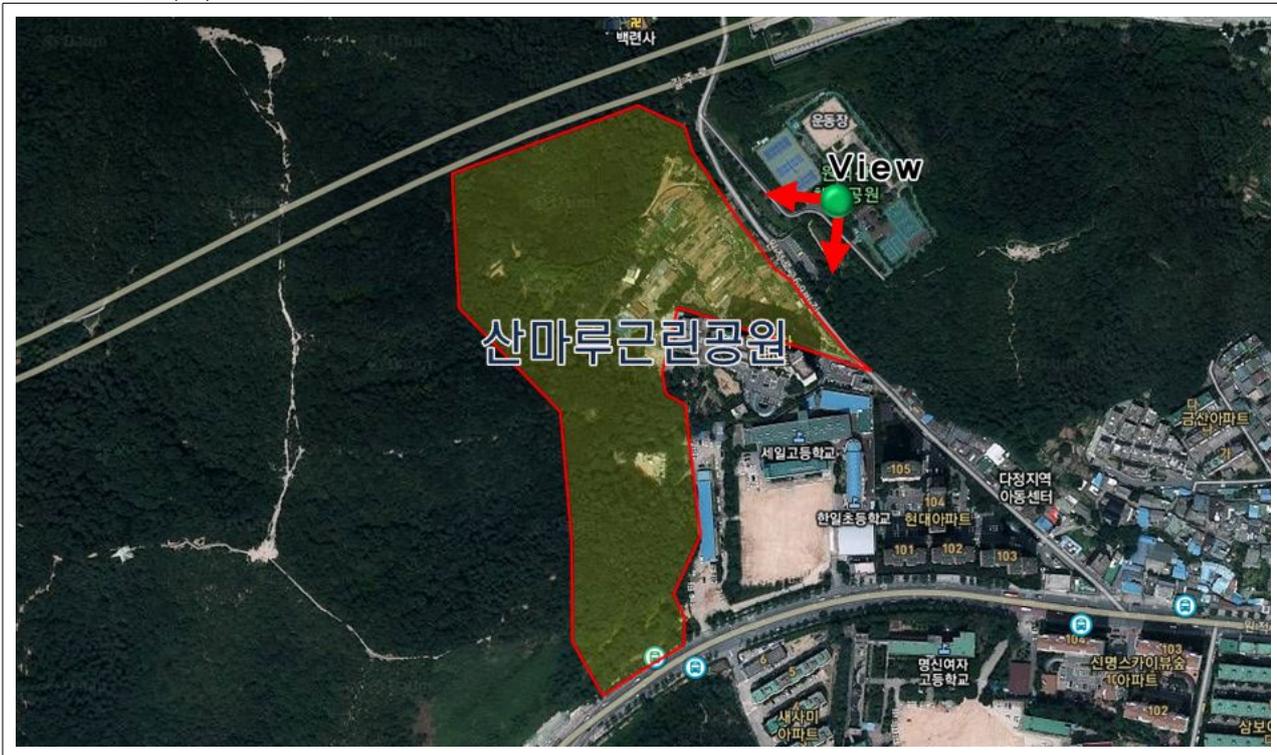
### 24. 굴재미공원



25. 서달공원



26. 산마루공원





## 29. 장고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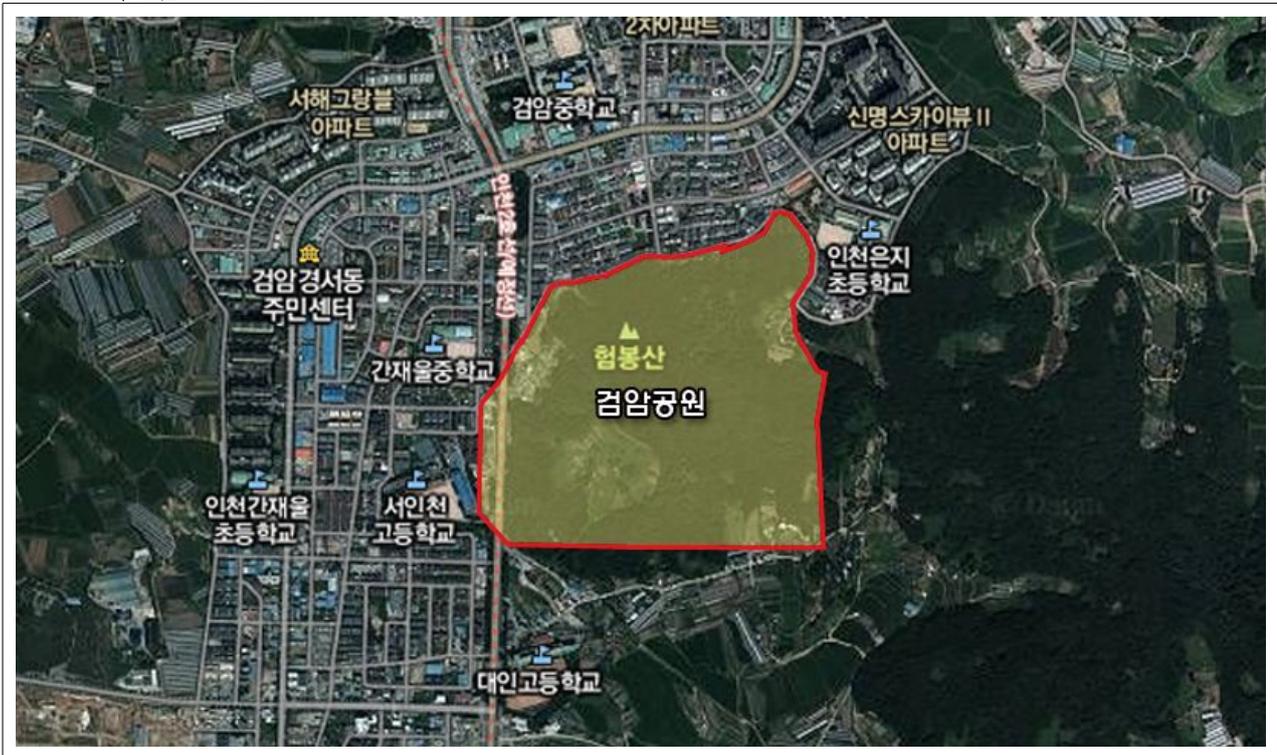
## 30. 새벌공원



### 31. 아나지공원



### 32. 검암공원



33. 검단25호공원



34. 검단23호공원



35. 검단17호공원



36. 검단24호공원



37. 검단16호공원



38. 금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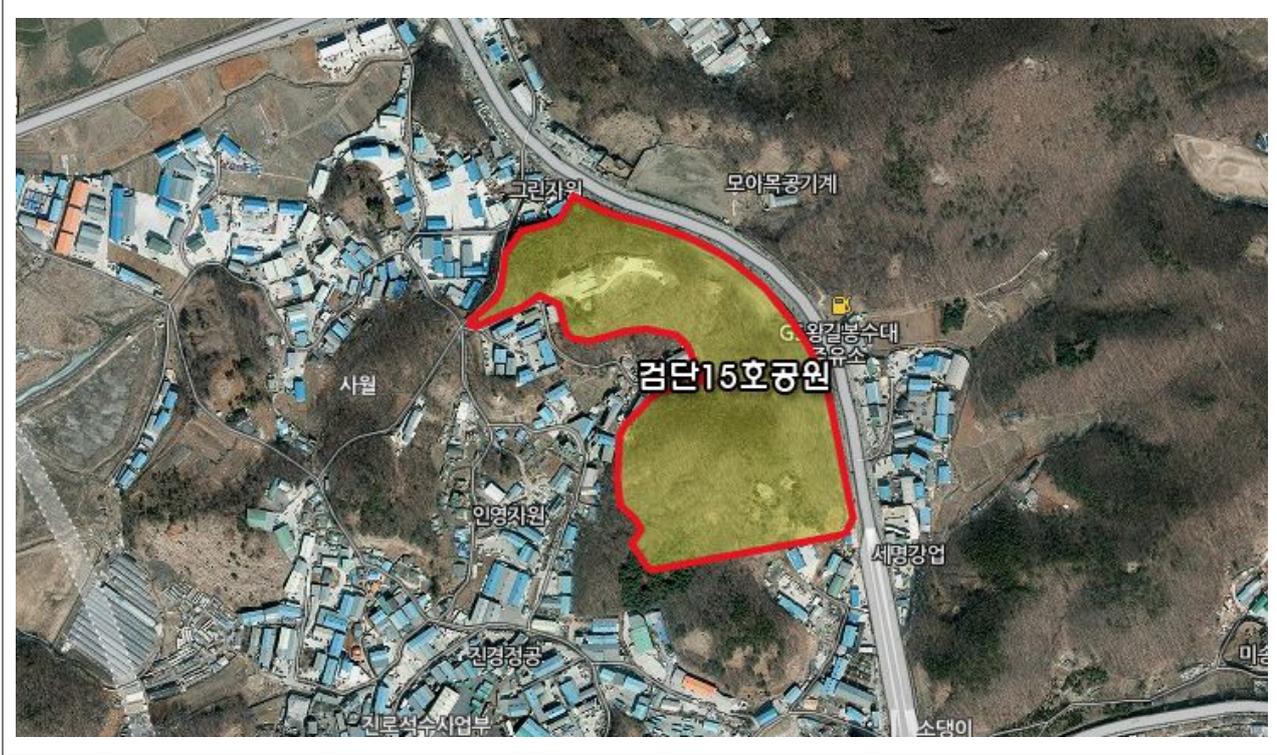
### 39. 승학공원



### 40. 검단14호공원



41. 검단15호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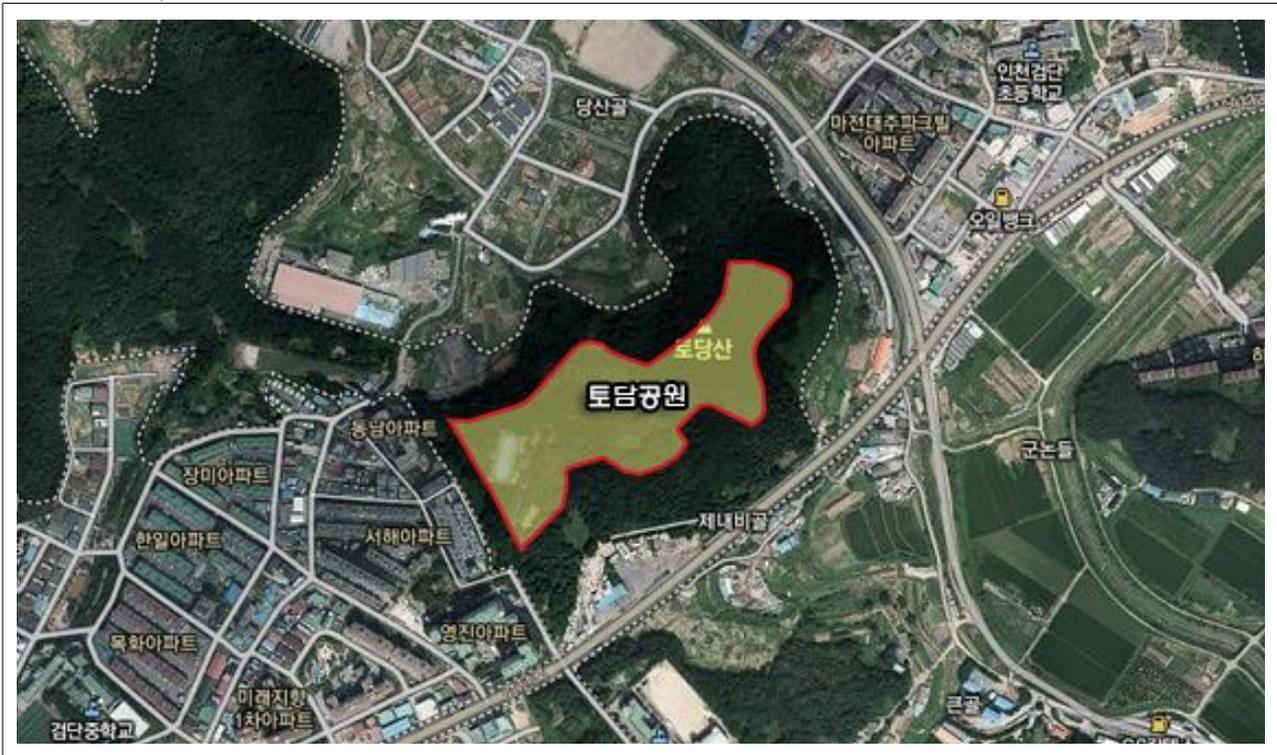
42. 마전공원



### 43. 금곡공원



### 44. 토담공원



#### 45. 장도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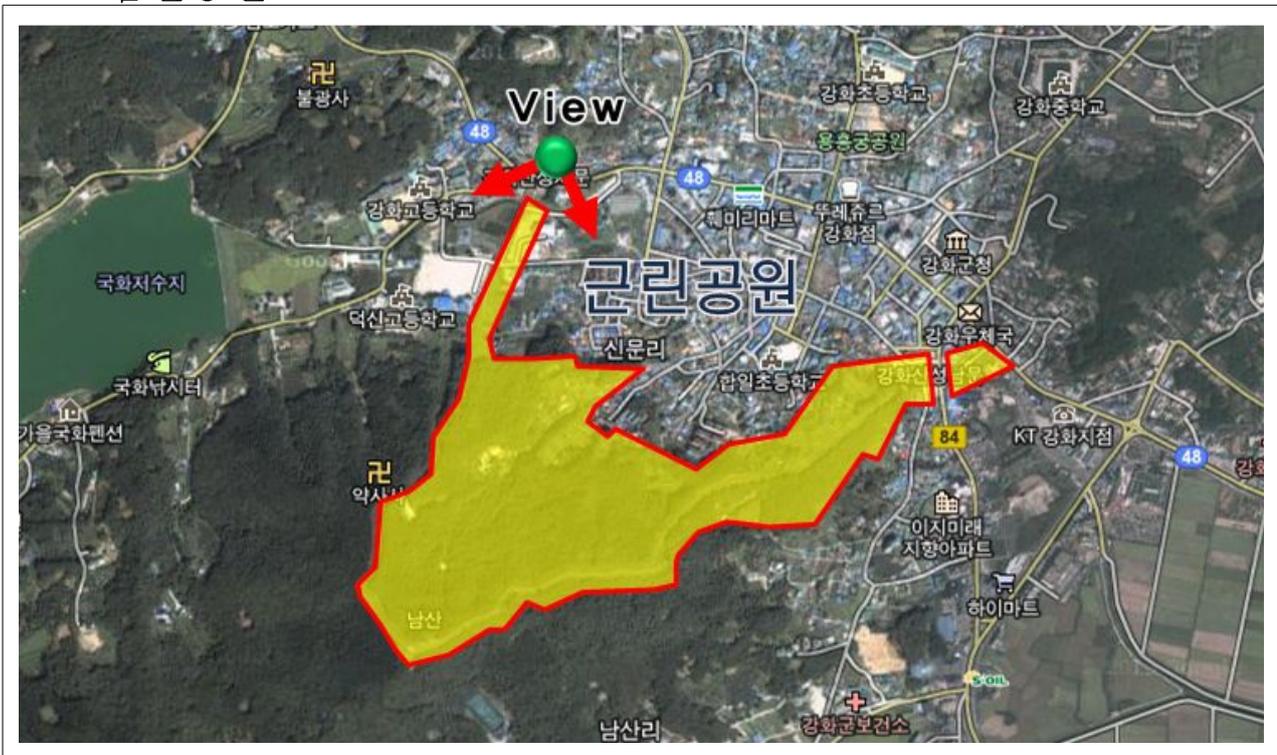
#### 46. 돌곶골공원



47. 관청공원



48. 남산공원



49. 내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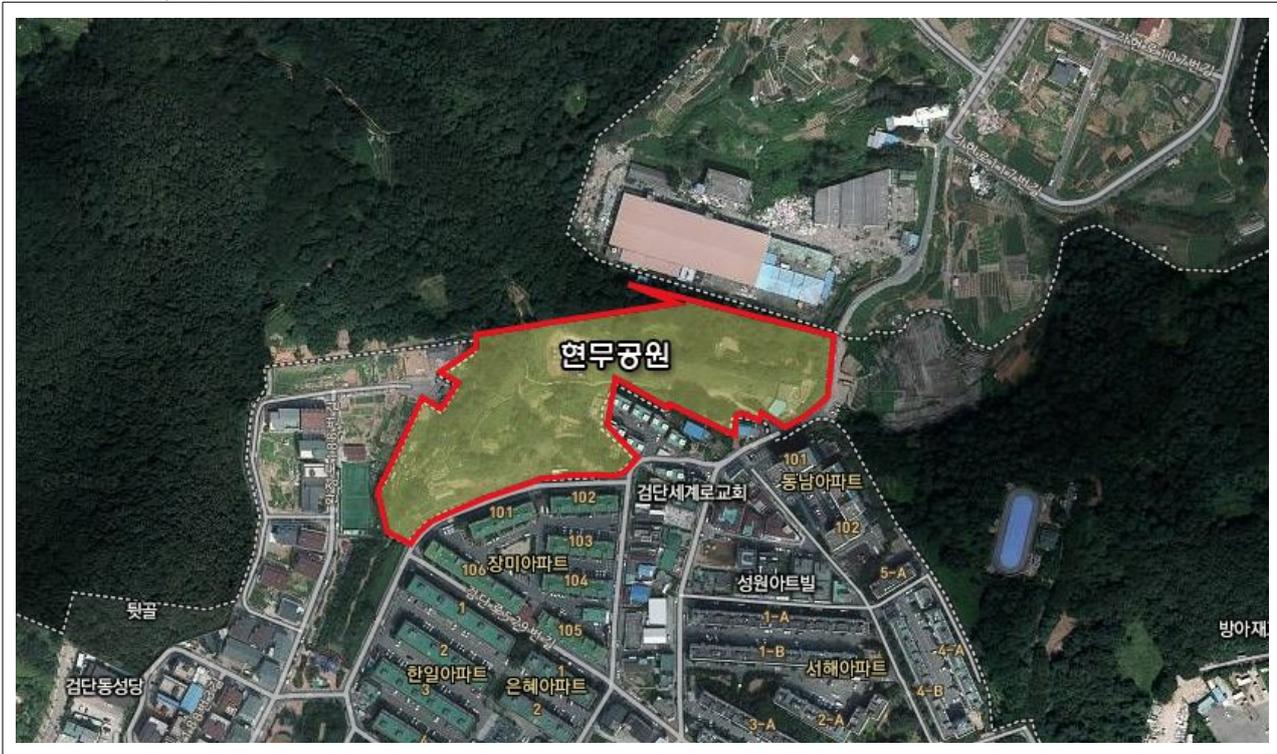
50. 대룡공원



51. 온수공원



52. 현무공원



53. 전등공원



54. 북산공원



55. 청량공원



56. 도롱농공원



# 위 치 도

○ 녹지 (9개소, 692,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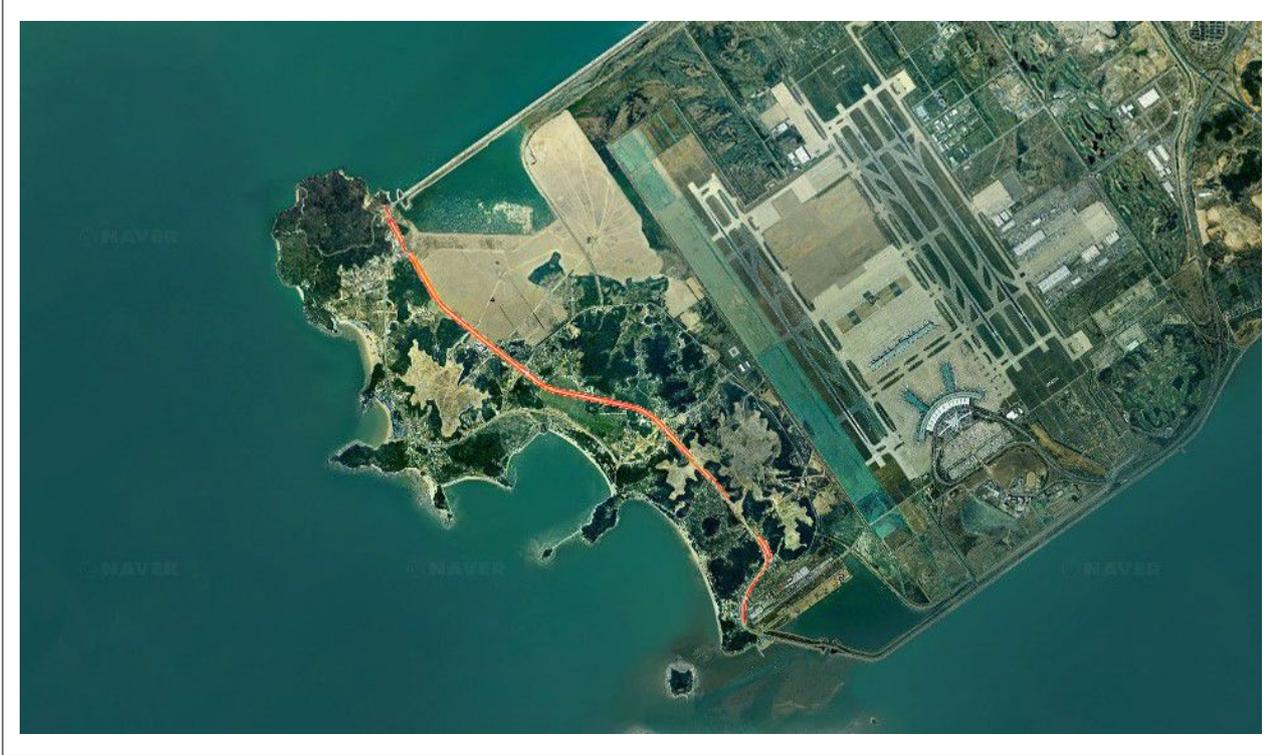
## 1. 녹지 (대로1-502호선변)



## 2. 녹지 (대로1-501호선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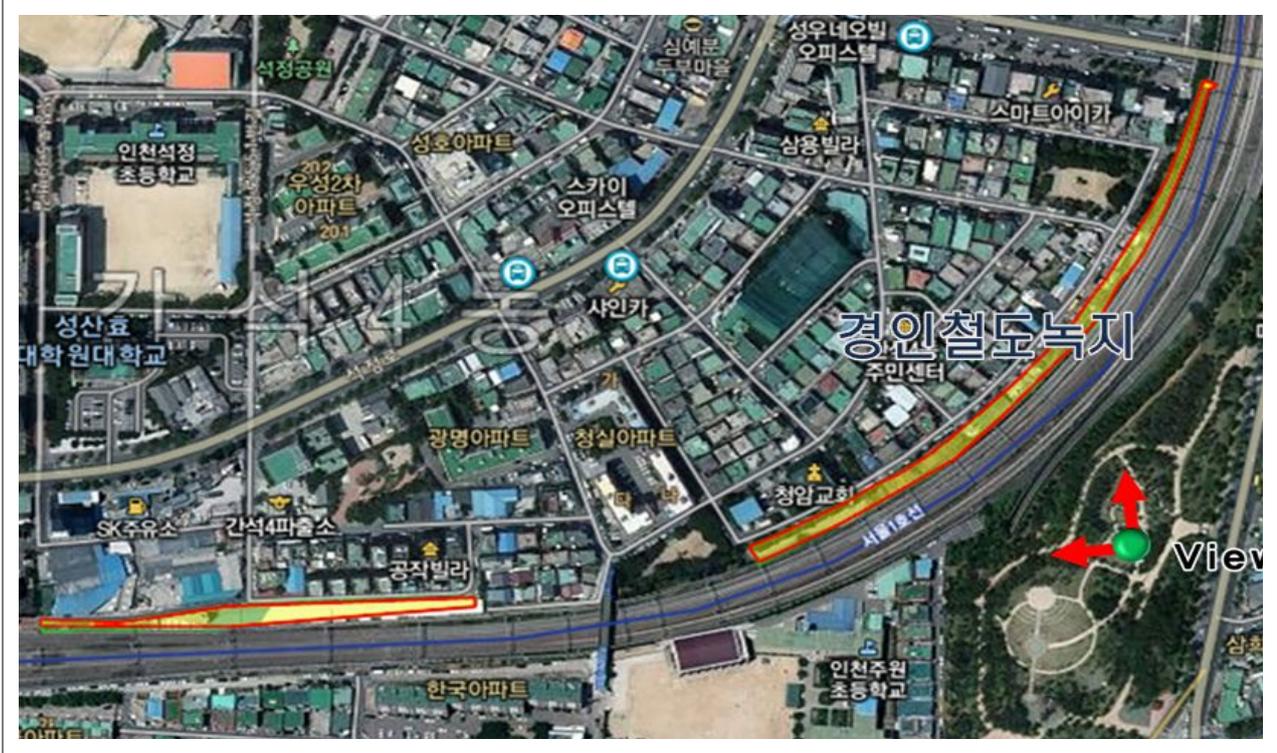
### 3. 녹지 (대로2-501호선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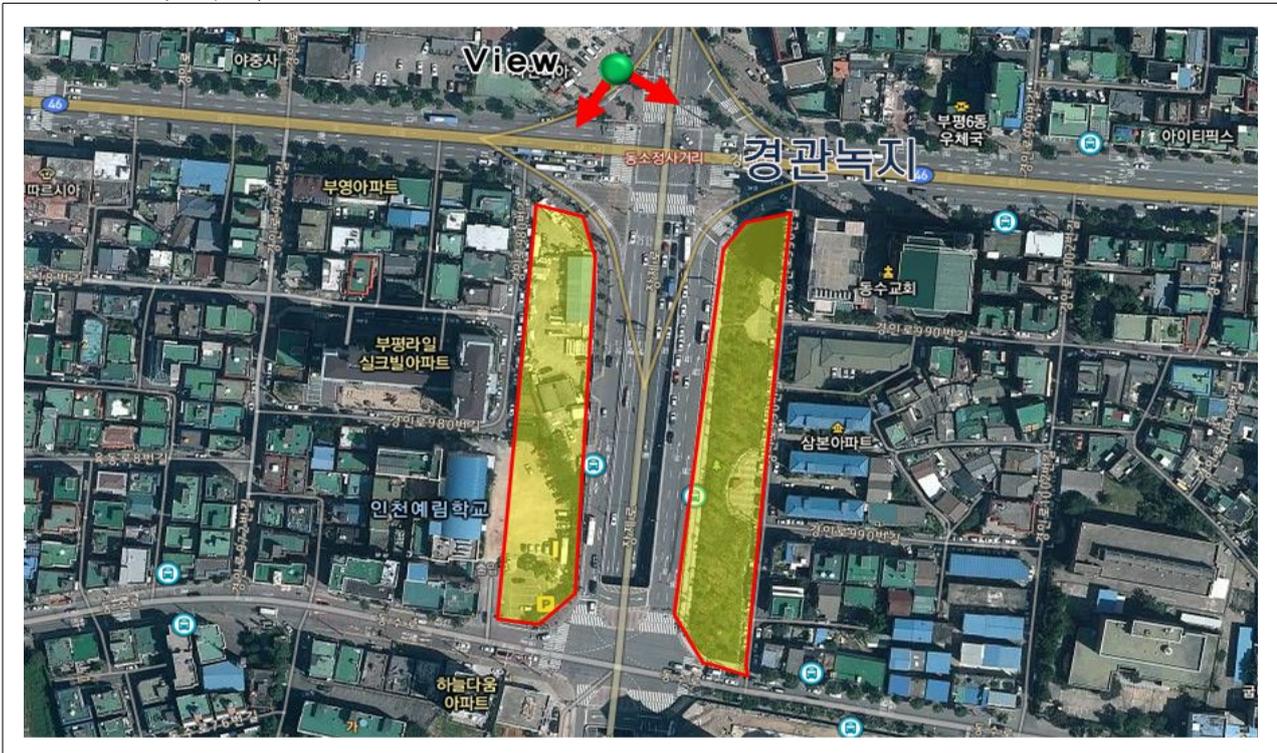
### 4. 학익녹지



## 5. 경인철도녹지



## 6. 동수녹지





9. 남산2녹지



# 관 계 법 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 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 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제목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